

이것은 2020년 9월 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외국인 입국·재입국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2020년 8월 28일 현재

1 9월 1일 이후 상륙거부 대상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주 1)이 입국·재입국하는 경우, 방역상 원칙적으로 추가적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2 구체적으로는 ①신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 등에 따라 체류한 국가·지역의 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거나, ②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유사재입국허가 포함. 이하 동일)로 출국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한 국가·지역의 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교부 받거나, ③9월 1일 이후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청에서 출국전에 수리서(주 2)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한 국가·지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COVID-19(코로나19) ‘음성’ 판정 검사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주 3).

검사증명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1)의 소정의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정의 양식을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단, 지정 양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구체적으로는
ㄱ) 인적사항(이름,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ㄴ)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지정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집검체, 검사법으로 한정한다.), 검사결과, 검체접종일시, 검사결과결정 연월일, 검사증명교부 연월일), ㄷ) 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주소, 의료기관날인(또는 의사의 서명)) 전 항목이 영어로 기재된 것에 한함.)

3 출국전 검사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검사관에게(재입국자는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입국심사관에게 이와 같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해 상륙거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 출국전검사증명서를 제출해 상륙이 거부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의거해 재류자격취소 및 강제출국조치 대상이 됩니다.

(주 1) 이하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특별영주권자
-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 2) 9월 1일 이후 재입국허가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출입국체류관리청에서 수리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리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출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상륙 거부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서 교부 절차는 [이곳](#)을 참조 하세요. 또한 9월 1일~6일 사이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항의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관에게 재입국예정임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주 3) 일본으로 입국·재입국이 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전검사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증 또는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급하게 일본으로 입국·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신청서와 함께 그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치료 (재검사 포함) 및 출산을 하기 위해 급하게 일본으로 입국·재입국을 할 필요가 있다.

(소명 서류 예시 : 급하게 일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

○ 일본에 거주중인 친인척이 중태 혹은 사망해 친족의 병문안 혹은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므로 급하게 일본으로 입국·재입국할 필요가 있다.

(소명 서류 예시 : 중태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사망증명서, 대상자와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등)

연락처 : 출입국체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

전화 : (대표) 03-3580-4111 (내선 4446 · 4447)